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64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장○○, 배○○
피 고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76,675,360원, 농어촌특별세 21,916,880



원, 지방교육세 131,501,3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65,750,652원, 농어촌특별세 3,287,533원, 지방교육세 6,575,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5. 민법 제32조, ○○○○○○○부 및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 1. ○○ ○○구 B 대 582.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876,675,360원, 농어촌특별세 21,916,880원, 지방교육세 131,501,3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030,093,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30.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6.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지역 문화사업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이다. 원고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수행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문화예술단체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기 어렵다. 어느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10,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및 게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법인설립 허가증(갑 제4호증)에는 목적 사업이 '기능성 게임개발, 게임과몰입 예방 등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정관(갑 제5호증)에는 사업목적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사회의 가치 제고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건강한 게임문화 확립,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게임의 순기능 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공익사업을 수행하



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정관상 목적 사업 중에는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도서출판, 문화격차해소 및 다양한 문화 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예술 분야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서 살펴 본 '게임의 순기능 향상과 건강한 게임문화 확립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고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고, 원고의 정관상 목적 사업에는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기능성게임 개발, 게임 과몰입 예방 등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공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토리텔링 저작 지원 사업, 장애인, 극빈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익 사업, 재능 기부 활성화 및 영재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무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중 재단소개 란(을 제1호증의 1)에는 '원고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복지사업, 어린이청소년 복지사업, 장학사업, 교육사업, 학술 연구 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행한 사업 중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도서 출간(그림동화 <E> 출간 및 기증) 등 일부에 불과하다.

라) 원고는 2020. 10.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 사업은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구성)들이 자기주



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재료, 장비, 공간 등의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고의 홈페이지(을 제2호증)에서는 C 사업에 관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시도와 안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멤버십 커뮤니티 공간으로 끝없이 작은 창의성을 발현하여 더 큰 창의성으로 키워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원고의 내부 문서(갑 제25호증의 1)에는 C 사업의 목표(MISSION)가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Creative Confidence를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 사업에서 청소년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분야는 탐구(연구, 독서, 외국어, 아이디어 스케치), 기타(분해, 조립, 대화, IT, 원예, 휴식)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포함하고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갑 제8호증 제6쪽). 원고 역시 재무제표(갑 제10호증), 수입지출예결산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C 사업 관련 비용을 '지역 문화·체육·장학' 분야가 아니라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 분야의 사업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회화, 편곡, 작사, 연극 제작 등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 활동은 원고가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매개체일 뿐 원고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 및 수입지출예결산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출총액 가운데 지역 문화·체육·장학 사업 관련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 0.09% 내지 6.1%에 불과하다. 원고는 C 사업비용이 포함된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 관련 지출액이 총 지출총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므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관련한 비용 역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기지출액(A)	1,995,799,135원	2,660,203,315원	17,106,326,726원	7,790,780,073원
지역 문화·체육 · 장학 지출액(B)	96,435,694원	163,524,248원	341,755,693원	7,329,307원
비율(B/A)	약 4.8%	약 6.1%	약 1.9%	약 0.0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손○○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허가)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끝.